

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 
조례안 검토보고서



2023. 2. 16.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 
행정재경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회부경위

본 제정안은 2023.2.2. 황민철, 김수진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, 2023.2.3.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(의안번호 : 2829호)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3조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
-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
-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별 첨

라. 기타

1) 제정안 : 별 첨

2) 조례안예고 : 2023. 2. 3. ~ 2023. 2. 9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 취지

- 본 제정안은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, 규칙 제5조에 따라 양천구 거주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.

### 나. 주요 검토 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3조는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시차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.

### 다. 종합 의견

-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1항은 “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“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예비군의 육성·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1은 “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차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안이라 보고 드립니다.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「예비군법」

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예비군법 시행령」

제32조(예비군의 육성·지원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,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.

## □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

제5조(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범위)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### [별표 1]

#### 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

1~4. (생략)

#### 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- 가. 예비군 후생·복지장구 확보의 지원
- 나.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·격려
- 다.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
- 라.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
- 마.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
- 바.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